

##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규정

[시행 2019.8.22] [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185호, 2019.8.22, 일부개정]



연구처 연구지원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개정 2015.12.30.]

제2조(직무)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

- 1. 사회과학 분야 제 분과학문 전문연구, 학제간 연구의 기획, 수행
- 2. 사회과학 분야 학술대회, 세미나, 강연, 연속강연 등 학술교류의 기획, 수행
- 3. 사회과학 분야 산·학·연 협력 및 공동연구의 기획, 수행, 관리
- 4. 산하 연구소 및 연구센터의 연구, 학술교류, 산·학·연 협력 및 공동연구
- 5. 그 밖에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[개정 2015.12.30., 2019. 8.22.]

제3조(원장 및 직무대행 등) ① 연구원의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-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, 원장이 주관대학장과 협의·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, 연구조정실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[신 설 2015.12.30., 개정 2019. 8.22.]

제4조(조직 등) ① 연구원에 세계경제연구소, 비교문화연구소, 사회복지연구소, 한국정치연구소, 심리과학연구소, 중국연구소, 행복연구센터, 사회혁신교육·연구센터, 연구조정실, 정보자료실 및 행정실을 둔다.[개정 2019. 8.22.] ② 각 연구소, 센터 및 실에 장을 두며, 각 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행정실장은 직원 중 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[개정 2019. 8.22.]

- ③ 각 연구소, 센터 및 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.[개정 2019. 8.22.] 1. 세계경제연구소는 지역경제연구, 국제경제문제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전문인력양성, 해외 각국과의 국제경제에 관한 학술 및 연구전문인력 교류에 관한 사항
- 2. 비교문화연구소는 문화에 관한 조사연구, 각국 지역연구기관과의 전문인력 교류 및 공동조사연구,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연구 및 문화정책개발, 지역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
- 3. 사회복지연구소는 사회복지의 이론개발, 사회복지의 실천 방법의 개발, 국내·외 사회복지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
- 4. 한국정치연구소는 한국정치에 관한 역사적, 비교적, 이론적 연구와 이를 위한 자료수집 및 국내외 연구기관, 학회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
- 5. 심리과학연구소는 심리학 연구 촉진, 심리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책 연구, 사회봉사 서비스 활동 및 심리학 인접 분야와의 학제간 연구에 관한 사항
- 6. 중국연구소는 중국에 관한 역사,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에 대한 연구와 이를 위한 자료수집 및 국내외 학회, 연구기관, 정부기구, 기업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
- 7. 행복연구센터는 행복에 대한 연구, 행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행, 행복 문화 창출을 위한 자료집 및 세미나 등의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
- 8. 사회혁신교육·연구센터는 지역기반 수업과 융합·동섭 수업의 지원 및 활성화, 사회혁신에 관련된 다학제 연구에 관한 사항 [개정 2019. 8.22.]

9. 연구조정실은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과학의 종합화, 체계화 추진 및 연구원의 제반 과제에 관한 사항 [개정 2019. 8.22.]

10. 정보자료실은 도서 및 자료의 수집, 정리, 관리에 관한 사항 [개정 2019. 8.22.]

11. 행정실은 보안, 관인관수, 서무, 회계 및 그 밖에 행정에 관한 사항 [개정 2019. 8.22.]

[전문개정 2015.12.30., 개정 2019. 8.22.]

제5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원에 겸무연구원,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대학(원)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

③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객원연구원의 임명·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」에 따른다.

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[전문개정 2015.12.30., 개정 2019. 8.22.]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[개정 2015.12.30., 개정 2019. 8.22.]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[개정 2015.12.30., 2019. 8.22.]

1.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

2. 산하 연구소장 및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3.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4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 ③

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[개정 2015.12.30., 2019. 8.22.] ④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
2. 규정, 운영세칙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4. 연구과제 개발,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5. 연구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6. 간행물 출판 및 편집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연구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[개정 2019. 8.22.]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⑥

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자문위원)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[개정 2015.12.30., 2019. 8.22.]

제8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 [개정 2015.12.30.]

부칙 <제2185호,2019.8.22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